

2026년 「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」 모집 수정공고

충청남도과 (재)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재창업 육성 등 안정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「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」 참여 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

(재)충남경제진흥원장

1. 모집개요

□ **모집규모** : 420업체 내외

① 경영개선 370업체, ② 재창업 50업체

□ **신청기간** : 2026. 2. 27.(금) ~ 3. 26.(목) 17:00까지(기한 엄수)

※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(경영진단 500건 내외)되며,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를 부탁드립니다,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□ **지원대상** : 「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해당자

세부사업		지원 조건
충 남 도	경영 개선	■ '24.12.31. 이전 창업 및 전년 대비 월평균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- 매출확인 근거 :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) - 매출감소 판단 : '25년도, '24년도 월평균* 매출액 비교 * 개업일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매출액을 계산(예시. 개업일이 '24. 5. 29. 경우 5월~12월(8개월)의 합산 매출액을 8로 나누어 산출)
	재 창업	■ (재 창업) 폐업 후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 ■ (업종전환)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(업태변경 必)으로 변경 예정인 소상공인 ■ (창업도약)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*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*2025. 2. 28. ~ 2026. 2. 26.

□ 지원제외 대상

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
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)
-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)
-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- 휴·폐업(경영개선만 해당) 사업자
-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
- 지급보증보험(SGI서울보증) 발급 불가능한 자(※발급 불가능할시 선정 취소됨)
- 유사 사업 수혜자 제외(소상공인 대표자 기준)
 - 2024 ~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: 중소벤처기업부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- 2024년 희망재기 지원사업 : 충청남도, 충남경제진흥원
 - 2025년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(경영개선) : 충청남도, 충남경제진흥원
 - 2024 ~ 2026년 충남 15개 시·군 유사사업(경영개선환경 지원 등)
- 2024 ~ 2025년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도 포기자

2. 추진일정

사업공고 신청서 접수	⇒	경영진단	⇒	선정평가 진행 및 선정자 발표	⇒	사업수행 (사업화자금, 멘토링)	⇒	완료보고 및 정산
소상공인		전담멘토 현장방문		선정평가위원회 (진흥원)		전담멘토 ↔소상공인		소상공인
2월말 ~ 3월말		3월말 ~ 5월초		5월말		6월 ~ 8월		9월말

※ 위 추진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

3. 지원내용

□ 경영진단

- 전담 멘토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*와 대면 인터뷰를 통해 진단하고, 진단결과 보고서 제공

* 빅데이터 플랫폼(소상공인365)을 통한 경영진단을 진행 예정이며, 업종에 따라 경영진단이 안될 경우 전담 멘토 방문을 통한 인터뷰로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□ **멘토링 지원**

-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화 수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담 멘토*가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(월 1회)하여 사업비 집행 지도 및 멘토링 제공(3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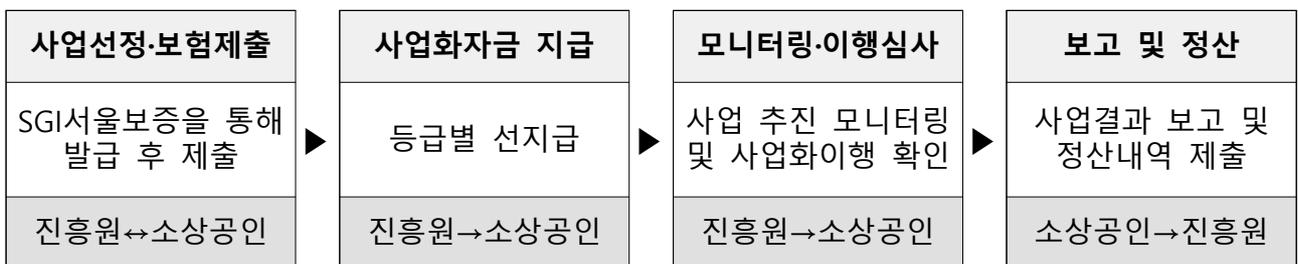
* 전담 멘토는 경영진단을 진행한 멘토와 동일인으로 최대한 진행

□ **사업화 자금 지원**

- 사업화 자금 :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(단, 부가세 본인부담)
 - 전액 선지급*하며, 사업수행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 진행
 - * 지급보증보험(SGI서울보증) 제출 시 선지급(발급 불가능할 시 선정 취소됨)
- 사업화 자금 규모 :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규모 차등 지원

구 분	S등급	A등급	그 외
경영개선 (370업체)	660만원 (70업체)	600만원 (220업체)	500만원 (80업체)
재창업 (50업체)	850만원 (10업체)	800만원 (30업체)	600만원 (10업체)

○ **추진절차**



○ **지원내용 및 사업화 자금 집행**

- 자금 집행시 견적서 필수(100만원 이상 집행시 비교 견적서 필수)
- 자금 집행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체크카드 영수증) 필수
- ※ 간이(종이) 영수증 불가(※수기 영수증 불가)

〈지원 세부 항목〉

지원항목	세부 항목
매장 모델링	▶ 사업장 소재지 상의接客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 소요 비용 (도배, 조명, 장판 등) ※ 지원제외 : 집기류 및 자산성격 물품 구매
브랜드 개발	▶ CI·BI 디자인,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소요 비용 ※ 단, 사업수행 기간 내 결과물이 산출되어 제출 할 경우 가능
마케팅 홍보	▶ 오프라인 마케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(간판, 현수막, 판촉물 등) ※ 판촉물 : 공급가액 기준 개당 단가 1만원 이하, 총액 100만원 이하 집행가능 ※ 지원제외 : 온라인 마케팅, 사업체 및 생산품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물품(업체명·BI·CI·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는 물품)
온라인 판로	▶ 판매제품의 사업기간 내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소요 비용 ※ 지원제외 : 단순 소모성 경비(포장, 배송비 등)
제품개선	▶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※ 시제품 제작 가능하나 판매 불가, 재료비 지원 불가
인증·평가	▶ 지재권, 인증취득(HACCP 등),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

- 모니터링 : 경영유지 여부, 매출액 증감, 고용인원 변동 등 온라인 설문·모니터링 협조 필수
- 사업화 이행 의무 : 사업종료시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(조건 미달시 사업화 자금 환수 등 조치 가능)

구 분	사업화 완료 기준	
경영개선	■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및 사업자등록 유지	
재창업	재창업	■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
	업종전환	■ 사업기간 내 업종전환(업태변경) 사업자등록 완료
	창업도약	■ 신청 이전 매출액 대비 사업 완료 이후 매출액 상승

-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
 - 사업종료 후 진흥원으로 전담 멘토를 통해 결과보고서(지출증빙)* 제출
 - * 결과보고서(별도양식), 사업자등록증명원, 지출 증빙서류 등
 - 사후관리 : 사업종료 후 1년간 성과관리(매출 및 만족도 조사 등)

4. 사업 신청

- **신청기간** : 공고일로부터 ~ 2026. 3. 26.(목), 17:00까지
 -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(경영진단 500건 내외)되며,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를 부탁드립니다,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**신청방법** :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(www.cnsp.or.kr) 신청
 - 통합지원시스템(www.cnsp.or.kr)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 가능하오니 반드시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*제출서류(신청시)**

구분	제출서류 및 발급 방법	
공통 서류	▪ <서식1> 사업신청서	https://www.cnsp.or.kr 서식 다운로드 → 작성 → 파일 업로드
	▪ <서식2> 사업계획서	
	▪ <서식3> 개인정보 동의서	
	▪ <서식4>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정보 동의서	
	▪ <서식5> 지원사업 참여 협약서	
	▪ 지방세 납세증명서 (공고일 이후 발급분)	① 온라인 발급 : (지방세) 정부24 (www.gov.kr) : 위택스 (www.wetax.go.kr) ② 오프라인 발급 : (지방세) 시/군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소상 공인 확인 서류	▪ (공통) 사업자등록증명원 (공고일 이후 발급분)	① 온라인 발급 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② 오프라인 발급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세무서
	▪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공고일 이후 발급분)	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
	▪ 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 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(공고일 이후 발급분)	① 온라인 발급 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 ② 오프라인 발급 :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

구분	제출서류 및 발급 방법	
경영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매출액 확인서류(2024년 / 2025년) - (일반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- 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*열람용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온라인 발급 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② 오프라인 발급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, 세무서
재창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재 창업)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*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*사실증명(총사업자 등록내역) 상 모든 사업체가 '폐업'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온라인 발급 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② 오프라인 발급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, 세무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업종전환) 사업자등록증명원 *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창업도약) 폐업사실증명원, 사업자등록증명원 *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(선 폐업→후 재창업) 	
기타 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점 사항에 적합한 증빙 서류 - 청년 소상공인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- 화재보험 가입자 :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-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: 공제금 지급 계산서 원본 또는 지급 안내 문자 - 총남이어家 증빙은 제출 해당 없음(진흥원에서 확인) 	

※ 발급 서류 중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으며, 도장(또는 서명)이 되어 있는 서류만 유효

※ 글자 또는 숫자 식별이 어려운 서류는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5. 선정 방법

□ 경영진단

-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 대상 등을 검토하여 경영진단* 대상 선정(선착순 500건 내외) 및 진단 실시

* 빅데이터 플랫폼(소상공인365)을 통한 경영진단을 진행 예정이며, 업종에 따라 경영진단이 안될 경우 전담 멘토 방문을 통한 인터뷰로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□ **1차 평가**

- 경영개선 : 경영진단 완료자 중 업력·월평균 매출액 감소비율 정도 등을 포함한 정량평가에 따라 1.2배수 이내 선정
- 재창업 : 경영진단 완료자 모두 2차 평가 진행

□ **2차 평가 및 최종선정**

- 선정평가위원회(외부전문가)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평가를 진행하며, 시·군별 규모*를 안배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* 미달지역 발생시 지역 관계없이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동점자 처리 : ①월 평균 매출 감소비율, ②정성평가 순으로 처리
- 평가항목 : 경영진단 결과, 신청자역량, 사업화 아이디어, 사업계획 등
- 가점항목 : 청년 소상공인(19세~39세*), 화재보험 가입자, 노란우산 공제 수급자, 충남이어家 소상공인 등
 - * 1987년 1월 1일 ~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

6. 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**선정시 제출서류**

제출서류	제 출 방 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행보증보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발행기관 : SGI 서울보증 ☞ 보증내용 :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관련 충남도(충남경제진흥원)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총 금액 반환 지급보증 ☞ 발급방법 : 충남도내 대리점 방문 등을 통해 '지급보증보험 발급'

□ **선정취소**

- 신청서의 허위 작성, 직인 누락, 신청자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- 신청대상 미확인(연락불능, 미숙지 등) 경우

- 지원 결정 통보 이전에 사업 수행을 진행하여 시공(제작)한 경우
- 사전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- 사업수행 기간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허위·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진행한 경우
- 사업 부실 등 경제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수행업체에 제작비 청구 등 부당거래가 발생한 경우

□ 기타 유의사항

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
- 소상공인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수행업체 선정 불가
- 증빙서류 미비 시 부족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진행할 수 있음
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향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년간 지원 제한됨

※ 지원제한 면제 : 천재지변, 재난·피해복구, 파산 등 그 외 사유의 경우 경제진흥원 담당자 판단에 따름

- 사업수행 종료 시점까지 영업 유지 필수(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현장 확인)이며, 영업 미유지시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함
- 사업수행 기간 내 휴·폐업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및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 조치 및 민·형사 소송이 가능함

□ 문의처

- ☎ 충남경제진흥원(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) 보부상콜센터(041-424-4000)